

## 방문취업(H-2)동포 불법 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

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(H-2)동포를 고용한 사업장, 근로개시 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,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 없이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

**[1] 신고 기간:** '13.10.1.(화) ~ 10.31.(목) 까지 운영

**[2] 신고 대상 사업장**

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가운데 아래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
  - ⓐ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포(H-2)를 고용한 사용자
  - ⓑ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
  - ⓓ 고용변동 등 신고 미이행 사업장: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

**[3] 신고 방법:**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붙임 서식에 따라 고용센터에 접수

**[4]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치**

-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외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, 고용제한 등 제재 조치 면제
- 특례고용가능 미확인 사업장은 30일, 그 외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일
- 기간 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업무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 조치(단, 시정지시 기간 중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제재 없이 종결)

**[5] 문의:** 서울고용센터 외국인팀 02) 2004-7397~8(Fax: 6915-4022)

**서울고용노동청**